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6회 임시회 (2024. 2. 29.)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검토보고서**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권하나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17
- 나. 제안자: 안미자 의원 외 7인
- 다. 제안일자: 2024년 2월 16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2월 20일(화)

### 2. 개정사유

출자·출연 기관의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14조)
- 나.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시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다.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- 나. 입법예고: 2024. 2. 15. ~ 2. 21.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안미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포구가 직접 출자·출연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임.
- 마포구의 출자·출연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, <표1>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출자기관<sup>1)</sup>은 없으며, 출연기관<sup>2)</sup>으로서 마포문화재단,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, 마포복지재단 총 3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.

<표1> 마포구 출연 기관 현황

연번	법인명 (소관부서)	설치 근거법령	목 적	설립년도
1	마포문화재단	-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	2007년
2	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	-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지역핵심인재를 발굴·육성하기 위함	2013년
3	마포복지재단	-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,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	2021년

- 
- 1) 출자기관(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) :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
  - 2) 출연기관(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) : 지방자치단체가 문화, 예술, 장학,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<sup>3)</sup>에서 경영 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
- 현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제10조 (경영실적 평가 등)에서 경영실적 평가, 경영진단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각각의 평가방법 및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이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의 목적인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여짐.
  - 제11조(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), 제12조(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), 제13조(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, 제14조(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)
- 그러나,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분배의 전제가 요구됨을 감안하여,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구청장이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, 이러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 조치요구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따라서,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의 활용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.

---

3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1조(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)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, 안 제14조(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)에서는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였음.
  - 안 제14조제1항제3호의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”으로 수정하였음.
- 안 제15조(평가의 활용)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며,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 -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져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.
  - 그리고,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·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 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.
  - 국회는 법 제36조<sup>4)</sup>를 근거로 경영실적 평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서울시<sup>5)</sup>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
#### 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36조(국회에 대한 보고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5)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제20조(평가의 활용) ① 시장이 제16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- 안 제16조(시정명령 등)에서는 구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및 확인·점검과 조치사항 보고,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하도록 규정한 바, 관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.
- 참고로, 서울시 자치구 중 “평가의 활용” 또는 “시정명령 등”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구는 강동, 노원 등 8개 구<sup>6)</sup>임.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자·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더불어,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통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--

6) 강동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성동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용산구

**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31조(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)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